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대한건설협회장

(경유)

제목 복합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및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

1. 건설진흥실-319(2021.7.15.)호 관련입니다.

2.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및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설물유지보수공사의 업무범위나 시공자격 부여에 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제4조, 제8조, 제9조)과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제4조)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?

☞ 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동법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우선 적용함

나. 시설물의 개량·보수·보강 공사(건축물의 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공사,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·확장·주요구조부 해체 등은 제외)로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중 어느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? 또한,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, 그 기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발주자가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는지?

☞ 시설물의 개량·보수·보강 공사로서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 발주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」에 따라, 우선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여야 하며, 이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함

다. 질의2에 따라 종합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일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해당 종합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는지 여부? 공정건설추진팀-118('21.1.13.)호 문서에 포함되었던 '유지보수공사가 종합적인 계획·관리·조정이 필요할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 가능하며, 이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참여할 수 없음'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공정건설추진팀-322('21.2.29.)호 문서의 의미가 '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가능'을 뜻하는 것인지?

☞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서 종합적 계획·관리·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음. 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2 이상의 주된 공사 업종을 모두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음.

공정건설추진팀-322('21.2.29.)호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공정건설추진팀-118('21.1.13.)호 문서로 인해 발주기관이 복합 유지보수 공사 발주 시 종합적 계획·관리·조정이 필요없는 전문공사도 종합공사로 발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공문 문구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,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보유한 자가 종합공사에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**김국남** 시설사무관 **하철호** 공정건설추진팀장 **박효철** 전결 2021. 8. 23.

협조자

시행 **공정건설추진팀-1435** (2021. 8. 23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11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497 팩스번호 044-201-5548 / t6342@molit.go.kr / 비공개(5)

함께 지킨 청렴의식, 함께 누릴 국토교통